평창군농업기반정비사업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87

제출년월일 : 2016. 1. .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1. 제안이유

○ 「농어촌정비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 합치하지 아니하는 부분을 개정하여 위법성을 해소하고 법에 합치하는 군정을 구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○ **조례안 제1조, 제2조, 제5조 및 제11조**

-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및 용어 수정

(농업기반정비사업⇒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)

○ **조례안 제4조**

- 상위법령에 따른 토지가격 평정방법 명확화, 근거 없는 인용조문 삭제(위원회 심의 결정 ⇒ 수혜자총회 의결)

○ **조례안 제6조제3항, 제7조제2항**

- 손실보상금의 징수교부 방법을 「농어촌정비법 시행령」제42조에 정한 방법으로 변경(위원회 심의 결정 ⇒ 협의, 대의원회 심의)

- 환지 청산금의 지불 및 징수방법과 시기를 「농어촌정비법」제25조 및 제37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변경(위원회 심의 ⇒ 환지계획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붙임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　　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　　타

1) 입법예고(2015. 09. 23. ~ 2015. 10. 13.) 결과 : 제출의견 없음.

2) 규제심사, 부패영향평가, 성별영향분석평가 : 원안 동의

평창군 조례 제 호

평창군농업기반정비사업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농업기반정비사업시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평창군농업기반정비사업시행조례”를 “평창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제9조”를 “제10조”로, “농업기반정비사업”을 “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”으로 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농업기반정비사업”을 “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”으로 한다.

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종전의 토지 및 사업시행 후 토지의 평정 가격, 등급 결정, 환지 구역 분할 등과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의 결정은 해당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의 수혜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 다만, 그 지역의 수혜자 총수가 100명을 초과할 경우에는 대의원회의 의결로 수혜자총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.

제4조제3항을 삭제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는 농업기반정비”를 “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농업생산기반 정비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농업기반정비사업”을 “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”으로 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보통 생길”을 “통상적으로 생길 수 있는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위원회에서 심의”를 “사업시행자와 손실을 받은 자가 협의하여”로, “결정하되”를 “결정하되 수혜자총회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대의원회에서 심의 결정하고”로 한다.

제7조제2항 중 “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여야”를 “해당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야”로 한다.

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농업기반정비 사업”을 “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평창군농업기반정비사업시행조례	평창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 조례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----- 제10조 ----------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----------.
제2조(사업의 범위)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하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. 1. ~ 7. (생 략)	제2조(사업의 범위) ----------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----------. 1. ~ 7. (현행과 같음)
제4조(토지의 가격평정) ① (생략) ②토지가격의 평정에 있어서 그 평정 기준과 등급수 및 등급차 등의 사정 방침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.	제4조(토지의 가격평정) ① (현행과 같음) ② 종전의 토지 및 사업시행 후 토지의 평정 가격, 등급 결정, 환지 구역 분할 등과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의 결정은 해당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의 수혜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 다만, 그 지역의 수혜자 총수가 100명을 초과할 경우에는 대의원회의 의결로 수

	혜자총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.
③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몽리자 총회의 위임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의로서 토지의 평정가격 및 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.	<삭 제>
제5조(일시이용지의 지정) ①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는 농업기반정비에 관한 공사가 준공 전이라도 그 공사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한 종전의 토지에 대신할 일시 이용지를 지정할 수 있다.	제5조(일시이용지의 지정) 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농업생산기반 정비 ----------.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③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는 일시 이용지를 지정할 때에는 일시 이용지와 종전의 토지에 따라 소유권, 지상권 또는 사용대차에 따른 권리를 가진 자에게 일시 이용지 종전의 토지 및 사용개시일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.	③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----------.
④ (생 략)	④ (현행과 같음)
제6조(손실보상금의 징수교부) ①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지정으로	제6조(손실보상금의 징수교부) ① ----------

인하여 보통 생길 손실은 보상한다.	------- 통상적으로 생길 수 있는 ---.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③제1항 및 제2항의 징수 및 교부금액은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되 그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.	③ ---------- 사업시행자와 손실을 받은 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되 수혜자총회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대의원회에서 심의 결정하고----.
제7조(환지교부) ① (생 략)	제7조(환지교부) ① (현행과 같음)
②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를 교부치 아니하고 금전으로 청산할 경우에는 그 금액의 지불 및 징수의 방법과 시기를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여야 한다.	②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해당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야 -----.
③·④ (생 략)	③·④ (현행과 같음)
제11조(권리변동 등의 신고의무) 법 제11조의 자격자는 환지계획인가 이전에 농업기반정비 사업의 시행지역 안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익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유와 토지의 소재, 지번, 지목 및 지적(가옥 기타공작물 포함)을 군	제11조(권리변동 등의 신고의무) ---------- ----------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

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1. ~ 6. (생 략)	----------. 1. ~ 6. (현행과 같음)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비용발생 요인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제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.

3. 미첨부 사유

-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 발생 없음.

4. 작성자

작 성 자	안전건설과 장 근 용
연 락 처	(033)330-2406

관계 법령

□ 농어촌정비법

제25조(환지계획) 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사업 시행 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사업 시행 후의 토지를 정하고, 이로 인하여 생긴 이해관계의 불균형을 금전으로 청산하게 하기 위한 환지계획을 세워야 한다.

② ~ ③ 생략

④ 환지계획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<개정 2013.3.23.>

1. 토지 소유자별 환지계획 및 청산금 내용

2. 종전 토지 및 시행 후 토지의 필지별 내용

3. 환지를 지정하지 아니하는 토지 및 그 밖에 특별한 취급을 하는 토지의 내용

4.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

⑤ ~ ⑧ 생략

□ 농어촌정비법 시행령

제42조(손실보상) 법 제38조제6항에 따른 일시 이용지의 지정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.